

#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

## ■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방법

서류제출 기한	2024년 3월 23일(토) ~ 3월 28일(목) 16시 도착분까지 (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 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)
제출 방법	견본주택 방문 접수
견본주택 위치	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동 450-1 (대표번호 : 042-531-1008)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한 내에 아래 자격서류를 발급하시어 견본주택 방문 후,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</li> <li>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,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</li> </ul>

## ■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출 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해당자			
공통 서류	○		특별공급신청서, 무주택서약서	본인	무주택 입증서류를 무주택 서약서로 대체, 인터넷 청약(청약Home)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
		○	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	본인	견본주택 비치 - 거래가액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계약 시(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, 입주권 전매를 포함)
	○		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	본인	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(본인 발급분)(본인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)(외국인 : 서명인증서)
	○		신분증	본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) 등 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/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
	○		주민등록표등본 (상세)	본인	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사유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상세"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 (상세)	본인	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(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) 및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 성명,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를 표기하여 "상세"로 발급 미혼, 이혼, 사별, 단독세대,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※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※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배우자	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사유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상세"로 발급)
	○		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(단신부임)	본인	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조 제8항에 의거 당첨자(청약신청자)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(본인만)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- 국내기업·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: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-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, 근로 관련 서류, 취업, 사업비자 발급내역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
기관추천(일반) 특별공급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 (단신부임)	세대원	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조 제8항에 의거 당첨자(청약신청자)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(본인만)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의 국내 거주를 증명
	○		복무확인서	본인	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기타지역 청약 시 복무기간 확인
	○		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	본인	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추천대상자에 한하여 기관추천(일반) 특별공급신청자격 인정 ※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또는 인증서, 추천명부로 접수
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		○	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	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
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	○		위임장	본인 (청약자)	- 견본주택 비치(청약신청자 인감도장 날인)
	○		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		* 본인(청약자) 외 모두 제3자로 간주(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)(외국인 : 서명인증서) 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(본인 발급분)
	○		대리인 신분증	대리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) 등 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/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

\*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(2024.02.29(목))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,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전체) 등을 포함하여 발급 하셔야 합니다.

\*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\* 특별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(검증)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표 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.

\*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